

1. 개정이유

이차전지 제조를 위한 위험물시설에 적용하기 어려운 현행규정을 개선하여 국내 이차전지 산업 육성정책을 지원하고, 대형산불 등 재난현장에 동원된 자동차에 대한 연료 보충의 불편을 해소하여 현장 대응력을 제고하며, 항공기에 연료를 주입할 때 우려되는 정전기화재 예방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유탱크차·주유호스차에서 항공기에 연료를 주입할 때 우려되는 정전기 화재의 예방기준 개선[안 별표 10 IX 제1호바목, 별표 13 X 제2호바목4) 및 별표 18 IV 제5호나목5)]

주유탱크차·주유호스차의 접지의무를 삭제하고, 접속의무만 유지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해당 차량의 접지도선 설치의무를 삭제하는 대신 항공기와 전기적으로 접속하기 위한 도선을 설치하도록 함

나. 이차전지를 제조하기 위해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기준 신설(안 별표 16 X의4 제1호·제2호)

건축물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허가를 받는 일반취급소의 벽·기둥·지붕 등 주요구조부, 사용 가능한 유리의 종류, 건축물 바닥의 경사도, 공조설비 및 위험물 배관의 재질 등에 관한 기준을 각각 신설함
다. 대형 산불 등 재난현장에 동원된 소방자동차 등에 대한 이동주유의

허용근거 신설[안 별표 18 IV 제5호아목4)]

재난의 범위, 주유하는 장소·대상·시설·방법 및 주입 위험물의 범위 등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이동주유를 허용하도록 함

라.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및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수수료 관련 용어 등을 명확히 함(안 별표 6 IX 제1호 및 별표 25 제2호가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IX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인화성액체위험물”을 “인화성이 있는 액체위험물”로 한다.

별표 10 IX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Ⅳ의”를 “Ⅳ 및 Ⅶ의”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주유호스”를 “항공기와 전기적으로 접속하기 위한 도선을 설치하고, 주유호스”로 한다.

별표 13 X 제2호바목4) 중 “접지도선”을 “항공기와 전기적으로 접속하기 위한 도선”으로 한다.

별표 16 I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X까지의 규정 및 X의2”를 “X의 4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방전 후에도 충전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전지(電池)를 제조하기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하며, 이하 “이차전지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라 한다)

별표 16 X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X의4. 이차전지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의 특례

1. I 제2호타목의 이차전지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 중 그 위치·구조

및 설비가 다음 각 목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해서는 I 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 중 별표 4 IV제2호·제5호, X 제1호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가.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벽·기둥·바닥·보·서까래 및 계단을 불연재료 또는 내화구조로 하고, 연소(延燒)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할 것
나. 별표 4 IV제3호에도 불구하고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가연성의 증기 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다.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 또는 방화유리로 할 것

라. 별표 4 IV제6호에도 불구하고 액체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바닥에 경사 및 집유설비를 두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험물 취급설비의 주위에 턱 또는 도랑을 설치하는 등 해당 설비에서 누설된 액체 위험물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마. 별표 4 V 및 VI에도 불구하고 환기설비 및 배출설비를 공조설비로써 갈음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조설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의2에 따른 국가건설기준센터
- 2) 미국 NFPA(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 3) 미국 FM(Factory Mutual)

바. 위험물을 취급하는 배관의 재질은 강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속성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배관의 재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고밀도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우레탄
- 나) 불소수지 중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Polytetrafluoroethylene)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갖는 불소 중합체

2) 배관의 구조는 내관 및 외관의 이중으로 하고, 내관과 외관 사이에는 틈새공간을 두어 누설여부를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배관의 재질이 취급하는 위험물에 의해 쉽게 열화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내 또는 국외의 관련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 또는 인증을 받을 것

4) 배관은 지하에 매설할 것. 다만, 화재 등 열에 의하여 쉽게 변형될 우려가 없는 재질이거나 화재 등 열에 의한 악영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I 제2호타목의 이차전지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것에 한한다) 중 일반취급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은 그 위치·구조 및 설비가 다음 각 목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해서는 I 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규

정 중 별표 4 I · II · IV · V · VI · VII 및 X 제1호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가. 이차전지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는 벽 · 기둥 · 바닥 및 보가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지하층 외의 층에 설치할 것

나. 건축물 중 이차전지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벽 · 기둥 · 바닥 · 보 및 지붕(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할 것

다. 건축물 중 이차전지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창은 망입유리 또는 방화유리로 하고, 출입구에는 60분+방화문(화재로 인한 연기 · 불꽃 · 열 등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폐쇄되는 구조인 것에 한한다)을 설치하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있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것으로 할 것

라. 건축물 중 이차전지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그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설치할 것. 다만, 위험물 취급설비의 주위에 턱 또는 도랑을 설치하는 등 해당 설비에서 누설된 액체 위험물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경사 및 집유설비를 두지 않을 수 있다.

마. 이차전지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 및 조명을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다만, 조명설비가 설치되어 유효하게 조도가 확보되는 경우에는 채광설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가연성의 증기 또는 가연성의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이차 전지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는 제1호 바목에 따른 기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공조설비를 설치할 것

사. 위험물을 취급하는 배관의 재질은 제1호바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별표 18 IV 제5호나목5) 중 “접지하고 항공기”를 “항공기”로 하고, 같은 호 아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직접 위험물을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말한다)의 연료탱크에 주입하지 말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장소에서 별표 10 IV제3호에 따른 주입설비를 부착한 이동탱크저장소로부터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된 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한정한다)의 연료탱크에 인화점 40℃ 이상의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장소에서 별표 10 IV제3호에 따른 주입설비를 부착한 이동탱크저장소로부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연료탱크에 인화점 40℃ 이상의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 이 경우 주유장소는 「소방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소방대장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안전한 장소로 해야 하고, 해당 이동탱크저장소는 주유장소에 정차 중인 자동차 1대에 대해서 주유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다른 자동차에 주유하지 않아야 한다.

- (1) 「소방장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방자동차
-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 소속의 자동차
- (3) 기타 「소방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소방대장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동차

별표 25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제조소등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금액

구분					수수료(원)
제 조 소	지정수량의 1천배 미만인 것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것			4만원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50배 이하인 것			5만원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100배 이하인 것			6만5천원
		지정수량의 100배 초과 200배 이하인 것			7만5천원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1천배 미만인 것			9만원
	지정수량의 1천배 이상인 것	구조·설비의 기술검토	기술인력별 작업구분	표준공량(지정수량의 1천배 이상 1만배 미만)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

저장소			기술협의 및 서류검토 (특급기술자)		0.25				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제조·취급시설의 설계심사(고급기술자)		0.80					
			소화설비의 설계심사(고급기술자)		1.32					
			보고서작성 및 기록관리(중급기술자)		0.25					
			그 밖의 사항의 심사							
	옥내 저장소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것						2만원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50배 이하인 것						2만5천원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100배 이하인 것						4만원		
		지정수량의 100배 초과 200배 이하인 것						5만원		
		지정수량의 200배를 초과하는 것						6만5천원		
	옥외 탱크 저장소	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준특정 옥외탱크저장소 외의 것	지정수량의 100배 이하인 것						2만원	
			지정수량의 100배 초과 10,000배 이하인 것						2만5천원	
		지정수량의 10,000배를 초과하는 것						4만원		
		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준특정 옥외탱크저장소	기초·지반, 탱크 본체 및 소화설비 의 기술 검토	기술인력별 작업구분		표준공량 (1백만 ℓ 이상 3백만 ℓ 미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합계	탱크본체 심사	기초지 반심사	소화설비 심사	
				기술협의 및 서류검토 (특급기술자)	0.313	0.125	0.125	0.063		
				기초·지반의 설계심사 (고급기술자)	1.250	0	1.250	0		
				탱크구조등의 설계심사 (고급기술자)	0.833	0.833	0	0		
				소화설비 설계심사(고급기술자)	0.400	0	0	0.400		
				보고서작성 및 기록관리 (중급기술자)	0.354	0.125	0.166	0.063		
				그 밖의 사항의 심사	용량이 50만 ℓ 이상 100만 ℓ 미만인 것					
		용량이 100만 ℓ 이상 500만 ℓ 미만인 것							8만원	
		용량이 500만 ℓ 이상 1,000만 ℓ 미만인 것							10만원	
		용량이 1,000만 ℓ 이상 5,000만 ℓ 미만인 것							12만원	
		용량이 5,000만 ℓ 이상 1억 ℓ 미만인 것							14만원	

			용량이 1억 ℓ 이상인 것				16만원
암반탱크저장소	기초·지반, 탱크본체 및 소화설비의 기술검토	기술인력별 작업구분	표준공량(탱크용량이 4억 ℓ 미만)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 법」 제31조 에 따른 엔지 니어링사업대 가의 기준의 실비정액가산 방식을 적용 하여 산출한 금액
		합계	탱크본 체 심사	기초지반심 사	소화설 비 심사		
		기술협의 및 서류검 토 (특급기 술자)	2.063	1.000	1.000	0.063	
		기초·지반 의 설계심 사 (고급기 술자)	7.541	0	7.541	0	
		탱크구조등 의 설계심 사 (고급기 술자)	6.541	6.541	0	0	
		소화설비 설계심사 (고급기술 자)	0.400	0	0	0.400	
		보고서작성 및 기록관 리 (중급기 술자)	0.563	0.250	0.250	0.063	
	그 밖의 사항의 심사	용량이 4억 ℓ 미만인 것	18만원				
		용량이 4억 ℓ 이상 5 억 ℓ 미만인 것	20만원				
		용량이 5억 ℓ 이상인 것	22만원				
옥내탱크저장소			2만5천원				
지하탱크저장소	지정수량의 100배 이하인 것		2만5천원				
	지정수량의 100배를 초과하는 것		4만원				
간이탱크저장소			1만5천원				
이동 탱크 저장 소	컨테이너식이동탱크저장소·항공기주유탱크 차 외의 것		2만5천원				
	컨테이너식이동탱크저장소, 항공기주유탱크 차		4만원				
옥외저장소			1만5천원				
주유취급소	옥내주유취급소 외의 것		6만원				
	옥내주유취급소		7만원				
판매취급소	제1종판매취급소		3만원				
	제2종판매취급소		4만원				

취급소	이송취급소	특정이송취급소 외의 것으로서 배관의 연장 (해당 배관의 기점 또는 종점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임의의 기점에서 임의의 종점까지의 해당 배관의 연장 중 최대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5km 이하인 것	2만5천원
		특정이송취급소로서 배관의 연장이 15km 이하인 것	8만원
		배관의 연장이 15km를 초과하는 것	8만원에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의 연장이 15km 또는 15km 미만의 끝수가 증가할 때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일반취급소	제조소의 수수료기준과 동일		

비고

- 지정수량 1천배 이상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특정옥외탱크저장소·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 수수료는 이 표에 정하는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와 기타사항의 심사에 대한 수수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 지정수량 1천배 이상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특정옥외탱크저장소·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대한 수수료 중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는 이 표의 [표준공량](#)에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취급량별 또는 탱크의 용량별 보정계수를 곱하여 얻은 [실제공량](#)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 및 기술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1천원 미만은 버리며, 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 중 기초·지반, 탱크본체 및 소화설비의 심사에 대한 것은 각각 19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취급량별 보정계수

취급량(단위: kl 또는 ton)	보정계수
1,000 이하	1.00
1,000 초과 1,500 이하	1.15
1,500 초과 2,000 이하	1.34
2,000 초과	1.56

비고: 지정수량의 단위가 다른 2 이상의 위험물에 있어서는 1kg을 1ℓ로 본다.

나. 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용량별 보정계수

탱크용량(ℓ)	보정계수	탱크용량(ℓ)	보정계수	탱크용량(ℓ)	보정계수
5십만 이상 1백만 미만	0.58	3천만 이상 4천만 미만	4.42	9천만 이상 1억 미만	9.48
1백만 이상 3백만 미만	1.00	4천만 이상 5천만 미만	5.22	1억 이상 1억 1천만 미만	9.97
3백만 이상 6백만 미만	1.42	5천만 이상 6천만 미만	6.21	1억 1천만 이상 1억 2천만 미만	10.06
6백만 이상 1천만 미만	2.36	6천만 이상 7천만 미만	7.36	1억 2천만 이상	11.6
1천만 이상 2천만 미만	3.03	7천만 이상 8천만 미만	8.03		
2천만 이상	3.75	8천만 이상	8.81		

3천만 미만		9천만 미만			
--------	--	--------	--	--	--

다. 암반탱크저장소의 탱크용량별 보정계수

탱크용량(ℓ)	보정계수
4억 미만	1.00
4억 이상 5억 미만	1.26
5억 이상	1.86

3. 제2호의 직접인건비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 중 건설부문 및 기타부문의 임금단가에 실제공량을 곱하여 산출하고, 직접경비·제경비 및 기술료는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가. 직접경비 = 직접인건비 × 20%

나. 제경비 = 직접인건비 × 110%

다. 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 × 20%

4. 같은 시기에 설치장소와 설계조건이 같은 2개 이상의 제조소·일반취급소 또는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한 기술검토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개 외의 나머지 대상에 대한 기술검토 수수료는 이 표에 의한 수수료의 3/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